

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 (제15조제3항 관련)

지급대상	기준호봉
1.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4조제3항·제9항을 적용받는 일반직·별정직 공무원	해당 계급 또는 해당 계급 상당 10호봉
2.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4조제4항을 적용받는 지방전문경력관	가. 가군: 10호봉 나. 나군 및 다군: 11호봉
3.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4조제6항·제7항을 적용받는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	가. 연구관·지도관: 8호봉 나. 연구사: 10호봉 다. 21호봉 이상 지도사: 12호봉 라. 20호봉 이하 지도사: 10호봉
4.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4조제10항을 적용받는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	가. 장학관·교육연구관: 25호봉 나. 30호봉 이상: 23호봉 다.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: 21호봉 라. 19호봉 이하: 18호봉